

##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

< 본 계약은 청렴계약(서약)제가 적용됩니다 >

- ◆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,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- ◆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·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(<http://www.pen.go.kr>) 공익제보센터)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계약상대자는 아래 청렴계약(서약)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·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
  - ➡ 입찰, 낙찰, 계약의 체결 및 이행, 감독·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, 증여, 금품·향응 등(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) 제공 금지
  - 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
  - ➡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·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

### <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 수칙>

1. 내선번호 확인: 공고문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누리집에서 점검
2. 발신처/공문(공고문) 진위 확인: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
3. 절대 선입금 금지: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
4.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: 피해 발생 시 경찰(112) 또는 금융감독원(1332) 즉시 신고

부산광역시교육청은 법정 지정정보처리장치(나라장터, 학교장터 등)를 통해서만 입찰을 실시하며, 입찰 및 계약 체결을 명분으로 금품을 직접 수취하지 않습니다.



**부산광역시교육청**  
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

## 2인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

본 공사는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·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**종합·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.**  
공고문 및 관련 법령(규정)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.

### 1 견적에 부치는 사항

- 가. 공 사 명 : 부산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방화시설 조성 공사  
나. 공사구분 : 종합공사  
다. 공사내용 : 방화시설 조성 공사 1식 등  
라. 공사기간 :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
마. 현장설명 : 현장설명은 생략하며, 본 공사의 설계서는 견적서 제출기간 내에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건축지원과에서 열람가능  
바. 견적서 제출기간 : 2026. 8. 7.(금) 09:00 ~ 2026. 8. 12.(수) 10:00  
사. 개찰일시 및 장소 : 2026. 8. 12.(화) 11:00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집행관PC  
아. 공사금액 (단위: 원)

| 공사추정금액<br>(A+B+C) | 추정가격(A)     | 부가가치세(B)   | 도급자설치<br>관급자재(C) | 기초금액<br>(A+B)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175,142,000       | 159,220,000 | 15,922,000 | 0                | 175,142,000   |

※ 관급자설치관급액: 0원

※ 원가산정기준: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, 표준품셈,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적용

###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

- 가. 총액견적, 전자계약, 제한경쟁(부산광역시),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.  
나. 국민연금보험료, 국민건강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퇴직공제부금비,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.  
다.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,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.  
라.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.

###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
- 나.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의한 「**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**」을 등록한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[신규사업자(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,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)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]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(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·인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)가 **부산광역시**에 있어야 합니다.
- 다.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(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받은 자)이어야 하며, 견적제출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, 대표자의 성명, 입찰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.
- 라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‘조세포탈 등을 한 자’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
### 4 견적 참가신청

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」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. 단, 미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.

※ 입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」 제4조(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)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.

### 5 견적서 제출

- 가.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.
- 나.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(<http://www.g2b.go.kr>)의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다.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 제출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,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.
- 라.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**개찰결과 유찰(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)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재입찰 실시**하며,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.

## 6 견적제출의 무효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」에 의합니다.

## 7 개찰 및 낙찰자 선정

가.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$\pm 3\%$  내의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자로부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.

나.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자 중 **낙찰하한율(89.745%) 이상**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.

※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**A값**(국민연금보험료, 국민건강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퇴직공제부금비,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안전관리비, 품질관리비의 합산금액)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.

<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항목(A값)>

| 구분    | 국민연금<br>보험료 | 국민건강<br>보험료 | 노인장기<br>요양보험료 | 퇴직공제<br>부금비 | 산업안전<br>보건관리비 | 안전<br>관리비 | 품질<br>관리비 | 계(A)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금액(원) | 2,664,273   | 2,016,433   | 264,959       | 1,290,069   | 3,078,556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9,314,290 |

다.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8조 및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」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.

## 8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

가.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.

나.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된 아래의 항목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및 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」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.

| 구분    | 국민연금<br>보험료 | 국민건강<br>보험료 | 노인장기<br>요양보험료 | 퇴직공제<br>부금비 | 산업안전<br>보건관리비 |
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금액(원) | 2,664,273   | 2,016,433   | 264,959       | 1,290,069   | 3,078,556     |

다. 견적제출 참가자는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,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거 사용내역을 사후 정산합니다.

- 라. 견적제출 참가자는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,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.
- 마. 견적제출 참가자는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,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.

## 9 청렴서약서 제출

- 가. 견적제출 참가 업체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견적서 제출 시 해당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나.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날인 한 청렴서약서를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#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제9장 계약일반조건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(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)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(구분관리제) 하여야 하고,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(지급확인제) 합니다.
- 나.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「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」 및 「노무비 전용통장 사본」을 제출해야 합니다.
- 다.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(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,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)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.
- 라.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(先지급, 현금지급,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. 단, 지급확인제는 적용됨)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(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)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(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)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.
- 마.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(수령자, 수령액, 수령일 등)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# 11 하도급 관련 사항

- 가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9조(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

(건설공사의 직접시공), 제31조의2(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)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.

- 나.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,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(관계) 법령에 따릅니다.
- 다.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라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「건설산업기본법」, 「전기공사업법」,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,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(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),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마. 또한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## 12 「하도급지킴이」 이용에 관한 사항

- 가.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「하도급지킴이」를 이용합니다.
- 나.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'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'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'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'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약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. 아울러,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약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된 약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.
- 다. 낙찰을 받은 자는 「하도급지킴이」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. 다만, 하도급자(장비·자재업체 포함)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.
- 라. 또한, 하도급대금, 노무비, 장비·자재대금을 「하도급지킴이」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,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, 노무비, 장비·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.

## 13 기타사항

- 가.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2조에 의거 [불임]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나. 견적제출(입찰)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, 지방계약법령,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, 입찰유의서, 계약 일반조건, 시방서 및 설계서,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

입찰자에게 있습니다.

다. 본 공사의 계약자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「중대재해처벌법」과 그 외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.

라.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“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”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. 입찰 및 계약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(<http://www.pen.go.kr/>)→민원·신고→신고하기→공익제보센터

마.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관련문의:

▷ 나라장터 이용안내: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☎1588-0800

▷ 공사 관련: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건축지원과 임봉규(☎ 8600-789)

▷ 공고 관련: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이선영(☎ 8600-742)

2026. 8. 5.

부산광역시교육청 재무관

## 「하도급지킴이」 이용 약약서

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·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약합니다.

- 당 사는 「하도급지킴이」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.  
아울러, 하도급자(자재·장비업체 포함)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.  
(※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, ‘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’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)
- 당 사는 하도급 대금, 노무비, 장비·자재대금을 「하도급지킴이」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.
  -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“인출 제한”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.
  -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, 노무비, 장비·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.

2025. . .

서약자 : ○○회사 대표 ○○○ (인)

부산광역시교육청(분임)재무관 귀하

[붙임 2]

■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[별지 제9호 서식]

##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

• 해당하는 [ ]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(1쪽)

|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발주자            | 발주기관    | 발주부서 | 발주날짜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발주내용    |      | [ ] 공사 [ ] 용역<br>[ ] 물품 [ ] 기타 |
|                | 수의계약 사유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계약상대자<br>(확인인) | 성명      | 소속   | [ ] 개인 [ ] 법인<br>[ ] 단체 [ ] 기타 |
|                | 연락처     | 주소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
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|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② | 계약 업무를 법령상·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, 배우자, 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③ | 발주기관(산하기관)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④ | 발주기관(자회사)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⑤ |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, 배우자, 국회의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⑥ |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, 배우자, 의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⑦ |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⑧ |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(공직자, 배우자, 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,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,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,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)에 해당하는가?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부산광역시교육감

계약상대자(확인인)

(서명 또는 인)